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

충청북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96
----------	-----

2020 12. 18.(금)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허창원 의원 등 7인

나. 제출일자 : 2020년 11월 20일

다. 회부일자 : 2020년 11월 23일

라. 상정일자 : 2020년 12월 9일

- 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허창원 의원)

가. 제안사유

-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 활성화와 기부식품등의 나눔 활동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나눔문화 및 공동체성 확산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위한 도 차원의 시책 수립·시행을 규정함 (안 제5조)
-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기부식품등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 교육,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 (김주희 수석전문위원)

가. 제출배경

- 푸드뱅크, 푸드마켓 등으로 알려진 기부식품제공사업은 1998년 금융위기로 인한 취약계층의 결식문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이래 전국적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기부식품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개정: 2016. 2. 3. / 시행: 2017. 2. 4.)에 따라 기부대상을 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 확대 적용하고, 전국 및 광역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 지역사회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됨.

- 현재 충북에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가 2018년 12월27일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 도 내 11개 시·군에는 26개의 푸드뱅크와 5개소의 푸드마켓이 운영 중임.
- 시군푸드뱅크(26개소): 청주8, 충주2, 제천2, 보은1, 옥천2, 영동1, 증평1, 진천2, 괴산2, 음성3, 단양2
- 시군푸드마켓(5개소): 청주1, 충주1, 제천1, 괴산1, 단양1

<충청북도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원현황>

구분	' 20년 예산	주요내용
계	96,741천원	
1. 인건비	81,564천원	· 2명(인건비, 수당, 사회보험 등) ·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자체규정 적용
2. 운영비	6,677천원	· 공공요금, 수용비, 여비 등
3. 사업비	8,500천원	
- 홍보비	4,000천원	· 분기별 홍보소식지 발송 · 기부업체 홍보물품 발송
- 종사사교육비	1,500천원	· 도, 시군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 종사자워크숍	3,000천원	· 충청권역 합동워크숍

- 2019년도 기준 충북의 기부물품 접수실적을 살펴보면, 10,202백만원으로 전국 5위, 광역도 중 3위의 실적을 보이고 있음.

(단위:백만원)

시도명	접수실적	시도명	접수실적
서울특별시	47,426	경기도	50,352
부산광역시	8,075	강원도	3,426
대구광역시	4,693	충청북도	10,202
인천광역시	13,784	충청남도	11,475
광주광역시	5,182	전라북도	7,981
대전광역시	5,099	전라남도	3,917
울산광역시	2,572	경상북도	5,711
세종특별자치시	968	경상남도	4,729
		제주특별자치도	2,606

- 기부식품등제공사업은 민간자원을 활용해 사각지대 결식계층의 건강 및 기본생활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사람들

에게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도 차원의 활성화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

- 본 조례안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범위에서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 활성화와 기부식품등의 나눔 활동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3조는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4조는 기부식품등에 의한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를 위한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5조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자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안 제6조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평가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함.
- 안 제7조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의 안전한 취급을 소홀히 하거나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을 방문해 검사 또는 조사를 하게 하는 등의 지도·감독과 이에 따른 시정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8조는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식품등의 기부 관련 기여자에 대한 포상 내용을 규정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식품등 기부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 사항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절차상으로 지역 푸드뱅크 관계자 및 해당 집행부와의 면담을 통한 의견 수렴 및 조례안 예고 등의 절차를 거친 바 문제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

충청북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 (허창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96
----------	-----

발의연월일 : 2020년 11월 20일

발의자 : 허창원, 박형용, 이숙애,
이상욱, 이의영, 장선배,
송미애

1. 제안이유

-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 활성화와 기부식품등의 나눔 활동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나눔문화 및 공동체성 확산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나.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 다.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위한 도 차원의 시책 수립·시행을 규정함 (안 제5조)
- 라.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마. 기부식품등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바.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 교육,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제9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조례안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0-100호
- 다. 협의 : 복지정책과
- 라. 비용추계 : 붙임

충청북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나눔 활동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 및 법 제2조제1의2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통해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기부식품등에 의한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도지사는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식품등 기부 관련 네트워크 구축·운영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교육
3.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4.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과 교육 실시 등을 위해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 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센터가 법 제3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검사 또는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검사 및 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교육·홍보 등) ① 도지사는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

관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 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충청북도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도지사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해 충청북도 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식품등의 기부 및 기부식품 등의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법령에 따라 지정·운영 중인 충북광역 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본다.

관계법령 발췌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 1의2. “생활용품“이란 세제·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의2(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사업자에 대한 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과 교육 실시 등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중에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사업장의 사업자가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평가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①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②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식품등의 일부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1조(시정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제3조제7항에 따른 신고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때

충청북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 활성화와 기부식품등의 나눔 활동을 지원
·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나눔문화 및 공동체성 확산에 기여하기 위함.

2. 비용 발생 요인

-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보조금 지원, 교육·홍보 지원
※ 교육·홍보 지원은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운영비에 포함하고, 보조금 지원 비용*은 시군과의 구체적 협의가 필요하며, 현 시점에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바,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비용추계에서 제외
*시군에 신고된 사업자(푸드뱅크, 푸드마켓)는 현재 시군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6조(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 등)

4. 비용 추계결과

- 재정수반 요인 :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운영비 5년간 519,272천원 정도 소요
- 추계의 전제
 -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연간 운영비 지원
 -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비용은 '20년 예산을 기준으로 하되,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인상률을(2.8%) 고려하여 산출
- 추계결과 : 2021년부터 향후 5년간 519,272천원 ※연평균 103,854천원
- 재원조달방안 : **도비** ※현재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중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연도별 비용추계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99,025	101,373	103,787	106,268	108,819	519,272
국 비						
도 비	99,025	101,373	103,787	106,268	108,819	519,272
세 출	99,025	101,373	103,787	106,268	108,819	519,272
광역기부식품등 지원센터	99,025	101,373	103,787	106,268	108,819	519,272

<항목별 비용추계>

구 분	합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519,272	99,025	101,373	103,787	106,268	108,819
인건비	443,387	83,848	86,196	88,610	91,091	93,642
운영비	33,385	6,677	6,677	6,677	6,677	6,677
사업비	홍보비	20,000	4,000	4,000	4,000	4,000
	교육비	7,500	1,500	1,500	1,500	1,500
	종사자 워크숍	15,000	3,000	3,000	3,000	3,000